#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61 발의연월일: 2024. 6. 17.

발 의 자:김상훈·강대식·강명구

강민국・강선영・강승규

고동진 • 곽규택 • 구자근

권성동 • 권영세 • 권영진

김 건 · 김기웅 · 김기현

김대식 · 김도읍 · 김미애

김민전 · 김상욱 · 김석기

김선교 · 김성원 · 김소희

김승수 · 김예지 · 김용태

김위상 · 김은혜 · 김장겸

김재섭 · 김정재 · 김종양

김태호 · 김형동 · 김희정

나경원 • 박대출 • 박덕흠

박상웅 • 박성민 • 박성훈

박수민 • 박수영 • 박정하

박정훈 • 박준태 • 박충권

박형수 • 배준영 • 배현진

백종헌 • 서명옥 • 서범수

서일준 · 서지영 · 서천호

성일종 · 송석준 · 송언석

신동욱 • 신성범 • 안상훈

안철수 · 엄태영 · 우재준

유상범·유영하·유용원 윤상현·윤영석·윤재옥 윤한홍·이달희·이만희 이상휘·이성권·이종바·이종욱 이일선·이종배·이종숙 이철규·이현승·인요한 임이자·임종득·장동혁 정동만·정성국·정연욱 정점식·정희용·조경태 조배숙·조승환·조은희 조정훈·조지연·최보윤 최수진·최은석·최형두 추경호·한기호·한지아 의원(108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인 가구의 증가, 고령화 가속 등 인구변화로 다변화되는 주택수요 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.

하지만, 최근 경기하강으로 주택공급이 전체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연립·다세대 등 비아파트의 공급은 더 크게 위축되어 다변화되는 주 택수요 대응이 부족한 실정임.

따라서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경감을 통해 1~2인 가구 주거수요

에 부응하는 다양한 임대주택공급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된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재도입하여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.

현행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의무를 두는 등 임차인 보호의무가부과되는 대신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저렴한 임대주택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.

그런데, 지난 2020년 법률 개정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한 결과, 민간임대주택의 재고가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제약을 받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다시 허용하되, 시장 과열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그 규모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로 제한하고, 소규모 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2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을 등록하는경우에만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는한편,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유형을별도로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4호·제5호·제6호·제7호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이상"을 "이상(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"이상"을 "이상(민간매입입대주택의 경우 1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)"으로, "민간임대주택[아파트(「주택법」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)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]을 말한다"를 "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주택법」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으로서 주 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 대주택은 제외한다.

6. "단기민간임대주택"이란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[아파트(「주택법」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)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]을 말한다.

같은 조 제7호 중 "1호"를 "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호수"로 하며,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민간건설임대주택만을 등록하는 경우: 1호
- 나. 민간매입임대주택만을 등록하는 경우: 2호
- 다.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모두 등록하는 경우: 2호

제5조제2항제3호 중 "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"을 "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"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11호 중 "것을 말한다"를 "것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말한다"로, "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"을 "민간매입임대주택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것을"을 "것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를"로, "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"을 "민간매입임대주택"으로 한다.

제42조제1항제2호 중 "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"을 "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" 및 단기민간임대주택"으로 한다.

제43조제1항 중 "제2조제4호 또는 제5호"를 "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"을 "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"을 "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"을 "장기일반민간

제4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"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"을 "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"으로 한다.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4호, 제5호,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자진 등록말소 관련 경과조치) 제6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등록한 종전의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(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「주택법」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 또는 제2조제6호의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종전의 규정에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행

1. ~ 3. (생략)

혅

- 4.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이 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 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 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 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. 가. ~ 마. (생 략)
-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 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 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[아 파트(「주택법」 제2조제20호 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)를 임대하는 민 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] 을 말한다. <단서 신설>

개 정 아 1. ~ 3. (현행과 같음) ----- 이상(민간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15년 이상으

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
로 할 수 있다) -----

5. "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"이란 | 5. "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"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 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(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 우 1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)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 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 다. 다만, 「주택법」 제2조제 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 닌 것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 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

<신 설>

7. "임대사업자"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(이하 "공공주 택사업자"라 한다)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 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8. · 9. 삭 제 10. ~ 15. (생 략)

주택은	제외	하다
7 4 7	711 41	Y' 4.

- 6. "단기민간임대주택"이란 임
  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
 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
  민간임대주택[아파트(「주택법」 제2조제20호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)
  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]을 말한다.
- 7. -----

\_\_\_\_\_

\_\_\_\_\_

- -- <u>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</u> 호수 -----
  - \_\_\_\_\_

-----.

- <u>가. 민간건설임대주택만을 등</u> 록하는 경우: 1호
- 나. 민간매입임대주택만을 등 록하는 경우: 2호
- 다.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 매입임대주택을 모두 등록 하는 경우: 2호

10. ~ 15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임대사업자의 등록) ① (생 제5조(임대사업자의 등록) ① (현 행과 같음) 략)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. 1. 삭 제 2. (생략) 2. (현행과 같음) 3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,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 간임대주택 ③ ~ ⑦ (생 략) ③ ~ ⑦ (현행과 같음) 제6조(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) 제6조(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임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. 다 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 하여야 한다. 1. ~ 10. (생 략) 1. ~ 10. (현행과 같음) 11.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 11. ------의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<sub>1</sub> (법률 제17482호 민 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

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

기 전의 것을 말한다. 이하

이 조에서 같다)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아파트(「주택법」 제2조제2이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)를 임대하는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신청(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하는 경우

12. ~ 17. (생략)

- ② ~ ④ (생 략)
- ⑤ 종전의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(「주택법」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)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.

⑥ (생략)

것으로서 주거전용면적
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
<u>아파트를 말한다 민간매</u>
입임대주택
12. ~ 17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⑤
 <u>것으로서 주</u>
<u>것으로서 주</u> 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
<del> </del>
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
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 과하는 아파트를 민간매입
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민간매입임대주택

- - 1. (생략)
  - 2. <u>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</u>의 경우: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
  - ② ~ ⑦ (생 략)
- 제43조(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) 기 입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(이하"임대의무기간"이라 한다) 동안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하며,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.
  - ② ~ ⑤ (생 략)
  - ⑥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<u>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</u> 과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 할 수 있다.

1. (현행과 같음)
2.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
기민간임대주택
<u> </u>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43조(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)
①
<u>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</u>
<u> </u>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<u>(6)</u>
<u>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</u>
<u>단기민간임대주택</u>
•

저	]44 <i>곱</i>	조(약	내.	료)	1	임디	H사업	자	가
	민긴	·임	대주	스택	을	임대	하는	경	우
	에	최	초	임	대토	분(임디	H보증	-금	과
	월인	김대	료들	= 3	또 힘	한다	. 이경	하	같
	다)	는	다음	<u>}</u>	각	호의	임대	료	와
	같디	}.							

- 1. (생략)
- 2. <u>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</u>의 경우: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. 다만,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(이하 "종전임대차계약"이라 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
- ② ~ ⑤ (생 략)

제44조(임대료) ①
1. (현행과 같음)
2. <u>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</u>
기민간임대주택
② ~ ⑤ (현행과 같음)